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0 ~ 1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0. 2. 11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○ 기업사랑 환경조성을 위해 시상하는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,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가. 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변경함
(안 제6조제3항, 안 제7조제3항).

○ 최고경영인상

- 종전 :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
- 변경 :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

○ 최고근로인상

- 종전 :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
- 변경 :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

나. 종전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련 개별조례를 통합한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를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4조).

다.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신설·확대함
(안 제16조의2 신설, 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).

-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 국내·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을 받은 경우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기준을 마련함
- 주사무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및 법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통합 디자인 개발·제작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함
- 관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창업성공을 제고를 위한 임대료 지원 기준을 마련함

라.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 지원에 관한 시책 중 경상남도과 동일한 시책의 경우 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을 일치시킴으로써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(안 제18조, 안 제19조, 안 제23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35조

나. 예산조치 : 2010년 본예산 확보(63,500천원)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, 예산담당)

라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(2009. 12. 29. ~ 2010. 1. 18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,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,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”을 “연 100분의 6 이하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원받고자 하는”을 “지원받으려는”으로 한다.

- 2.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3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

제16조제2항 중 “중소기업”을 “관내 기업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(시장개척 지원)** ① 군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 국내·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을 받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,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의 제목 “해외품질규격인정 지원”을 “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혁신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200명 이하인 기업이 해외품질규격 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중소기업”을 “관내 기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10명 이상”을 “5명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2(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지원)**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파워 브랜드 개발로 매출 극대화과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주사무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및 법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.

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3(창업보육센터 지원) ① 군수는 창업보육센터 내 보육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창업성공율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관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한정하며,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중소기업”을 “관내 기업”으로 한다.

제5조,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각각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) 군수는 유관기관·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사랑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.</p>
<p>제 6조(최고경영인상) ① ~ ② (생 략) ③ 대상자는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, 거창군투자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p>	<p>제6조(최고경영인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, 거창군 투자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p>
<p>제7조(최고근로인상) ① ~ ② (생 략) ③ 대상자는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, 거창군투자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p>	<p>제7조(최고근로인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, 거창군 투자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 <p>제18조(해외품질규격인정 지원)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고,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며, 신청 및 정산은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>제16조의2(시장개척 지원) ① 군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 국내·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컨설팅 및 마케팅을 받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,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18조(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)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 혁신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200명 이하인 기업이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 범위 에서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9조(국내 전시회참가 지원) ① 군수는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(박람회를 포함한다)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본문 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③ (본문 생략)</p> <p>1. 상시근로자가 <u>10명 이상</u>이고,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,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19조(국내 전시회참가 지원) ① ----- 관내 기업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본문 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본문 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5명 이상</u>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제19조의2(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지원)</p> <p>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도 통하는 파워 브랜드 개발로 매출 극대화와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주사무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및 법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 <p>제23조(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) ① 군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<u>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중소기업</u>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학생을 <u>거창군근로자자녀장학생</u> (이하 “장학생”이라 한다)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9조의3(창업보육센터 지원) ① 군수는 창업보육센터 내 보육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창업성공율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업체의 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관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한정하며,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</p> <p>제23조(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관내 기업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